

#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70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
  -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2호~7호(보호조치, 퇴소조치, 기타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)
-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 조정

## □ 주요내용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함(안 제4조)
 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
  -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간주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조건을 규정함 (안 제5조)
 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
-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의2)
  -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인원 명시(위원장 포함 7명 이내)
  - 위원장의 자격명시(아동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)
  - 위원구성(아동복지심의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)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입법예고 : 2021. 8. 6. ~ 2021. 8. 26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붙임5

방침결정문 : 붙임6

【붙임 1】

##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제6호까지의”를 “제7호까지의”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

제5조 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호까지의”를 “제6호까지의”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”을 “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조의2 (사례결정위원회)**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

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아동권리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아동권리과장 박 현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아동보호팀장 권 성화
	담당자 성명·전화	고명석 (행정 2605)

< 불임 2 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<u>제6호까지</u> <u>지의</u> 사항</li> <li>2. ~ 4. (생 략)</li> <li>5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1호부터 <u>제4호까지</u>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· 2. (생 략)</li> <li>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</li> </ol>	<p>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.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</p> <p>② -----</p> <p>---</p> <p>1. ----- <u>제7호까지</u> <u>지의</u> 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5조(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 <u>15명</u> -----</p> <p>----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제6호까지</u> -----</p> <p>----- 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</p>

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 략)

<신 설>

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
4.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 
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 
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 
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 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5조의2 (사례결정위원회) ① 제4조제1항  
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  
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 
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업무 관  
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 
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 
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 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